## 제목: 『야간금고약관』

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『야간금고약관』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시행 예정일: 2022.03.24■ 개정 약관명: 야간금고약관■ 기존손님 적용여부: 적용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제 1 조(금고의 이용) ~ 제 4 조(분실 신고 등) (생 략)	제 1 조(금고의 이용) ~ 제 4 조(분실 신고 등) (좌 동)	
제 5 조(면책)	제 5 조(면책)	-넣어->넣고
거래처가 입금가방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거나 야간금고에 잘못 <u>넣어</u>	거래처가 입금가방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거나 야간금고에 잘못 <u>넣고</u>	문구수정
생긴 사고 등 은행이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생긴 사고나 은행의	은행이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 및 제 4 조의	-넣어 생긴 사고
책임없는 사유로 거래처에게 생긴 손해 및 제4조의 분실신고나	분실신고나 절차지연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	-생긴 사고나
절차지연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	지지 않는다.	은행의 책임없는
		사유로
		->문구삭제
	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	문구추가
	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	
제 6조(해약) ~ 제 8조(준용) (생 략)	제 6 조(해약) ~ 제 8 조(준용) (좌 동)	